

部 會 消 息

公共圖書館部會活動

日時：4290, 10. 2 下后 2 時 (場所. 國立圖書館長室)

參席：朴萬奎 具恭會 黃圭郁 朴相培 張仁植
李肇榮 嚴大斐

案件：公共圖書館所屬에 關한件

司會：(朴萬奎部會長) 專務局長에게 經過報告를要望

專務局長 現在韓國에 있는 16 個 公共圖書館中 서울市立
南大門 鍾路 釜山市立、大邱市立、以上 4 個館은 管理
權을 教育廳에 移管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市, 邑에서
直營하고 있는데 教育委員會에서 運營하는 制度
는 豫算은 市에서 支出하고 管理만을 教育廳
이 한다든가 있습니다. 問題의 焦點은 어느 邊에 屬하는
것이 보다 有利한 條件이나 하는 것인데 이것은
全國公共圖書館의 緊急하고도 重要한 問題임으로 直
接體驗하고 있는 館長諸位의 忌憚 없은 實情을 交換함으
로써 圖協으로서의 態度를 決定할 段階에 達하는 經過를 報
告함

司會：教育委員會에 移管됨으로써 有利한 點과 不利한 點을 먼저

박희자는 前提下에 既設 移管의 圖書館의 實情紹介를
要望함

朴相培 釜山市立은 移管된 것이 有利하다 그理由는 첫째
는 文化敎育事業과 直接關係이 없는 市立에 比하여 敎育
委員會는 事業을 理解하고 積極協助해 준다는 것
둘째는 市에서 策定한 予算을 全額消費할수 있다는 것이다.

具泰會 서울市立의 境遇는 今年 1月 1日付로 移管하였는데
釜山과는 正反對로 매우 不利하다 그理由는 豫算問題인데
市 予算을 敎育委員會에 轉入하여 執行하는데 市에서 税金
徵收不良等의 口實로 移管後 10個月이되는 今目까지 圖書
購入은 勿論 一般豫算의 執行은 거의 못하고 있으며
人件費만은 간신히 義務敎育費中에서 借用하고 있다
는 惡心한 實情이라는 것이다

黃圭郁 大邱市立은 今年 7月 1日付로 移管되었는데 當
時는 多大한 期待를 가졌으나 只수에 의서는 失望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理由는 原則的으로는 敎育委
所屬에 贊成하나 豫算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限에는
何等의 意味가 없으며 設或 市에서 많은 予算을 策
定하여도 敎育委에 轉入이 되지 않으면 執行不可하니 結
果的으로는 事務的인 節次가 複雜해져서 止

有利한 것은 없다는 結論이다

張仁植館長 이問題는 法的인 義務規程이 아니고 昨年末
文教部로부터 地方自治團體에 所屬하는 『文化事
業關係事務教育委 移管에 關한 通牒』에 依하여 一
部에서 實施하고 있는데 (釜山市立은 其前부터 移管) 移管與
否는 어디까지나 市當局의 見解에 있는 것이며 問題
의 焦點은 豫算執行上의 矛盾에 있으니만큼 既히 移
管된 곳은 是正에 全力을 다할 것이며 萬不得已 情
境遇에는 本來에 還元하는 運動을 展開할 것이며
移管하지 않고 있는 館은 前者의 歸趨에 따라 態度
를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과

圖協은 文教當局과 서울, 大邱, 市長 및 教
育委 教育監에 實情을 開陳하여 是正을 呼訴
하자는 것이다.

具恭會, 黃圭郁館長 께서도 同一한 要旨의 發言이

있어 張仁植館長의 意見이 採録되었음 (以下略)

閉會 下后 6時30分

分類委員會報告

本會는 9月內로 標準分類法千區分の編纂을 期必完成
하여야 하겠다는 前月會議의 決議에 依據하여 이미 各
委員들이 提出한 分類法案을 綜合하여 再檢討하였으
며 特히 9月 15日부터 9月末까지는 各委員들의 公
私多忙함에도 不拘하고 每日 午後 6時 ~ 10時까지
日曜日도 缺애없이 會議를 開催하여 本分類法千區分
의 編纂을 一段落지였다

이에 對한 經過도 第五次定例理事會에 報告되었으
며 各委員들은 繼續하여 最終的인 本分類法再檢討은
推進中에 있으며 또한 本分類法의 分類學的見地에서
特徵解明도 研究中에 있다

第九次法制委員會

日 時 : 4290. 9. 11 午後 6 時

場 所 : 圖協事務局

參 席 : 金 聖 源, 李 石 善, 朴 熙 永, 金 永 權
李 鐘 文, 嚴 大 慶, 金 京 一

決議事項 : 다음의 大學圖書館條文採択을 決議함

1. 本法에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大學設置基準令에 依한 大學에 附設된 圖書館을 말한다
2. 大學에는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 各其基準에 따라 大學圖書館을 設置準備하여야 한다
3. 大學圖書館은 圖書 및 其他 必要한 資料를 蒐集保存하여 大學教育 및 學術研究에 寄與한다
4. 大學圖書館에 館長, 司書長(司書官) 其他 必要한 職員을 두고 館長은 正教授로 任命하며 司書長(司書官)은 圖書館專門職으로 任命한다
5. 大學에 大學圖書館委員會(以下委員會라 稱함)을 둔다 委員會는 圖書館運營에 關하여 協議한다 委員會에 必要한 事項은 各其大學에서 이를 定한다
6. 算案採択文中 第十九, 三十三, 三五系의 規定은 大學圖書館에 準用한다